

원전 수출사 핵비확산 행동강령

브뤼셀, 벨기에

2014. 3. 6

원전수출 행동원칙 서문의 기분을 유지하면서 참가사들은 이를 적절하게 검토하고 개정하였다. 원전수출 행동원칙은 2011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확정되었다.

*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됨

- 캐나다, 토론토 2013. 9. 26
- 일본, 도쿄 2013. 1. 16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2012. 7. 10
- 러시아, 모스크바, 2011. 12. 8
- 브뤼셀, 벨기에, 2011. 5. 20

목 차

원자력발전소 수출회사의 행동원칙 서문	1
원칙 1. 안전, 보건 및 방사성 방호	6
원칙 2. 물리적 보안	14
원칙 3. 환경보호, 사용후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취급	19
원칙 4. 원자력 손해배상	23
원칙 5. 핵비확산 및 세이프가드	26
원칙 6. 윤리	30
부록 A. 원칙 5의 부록. 핵비확산 및 세이프가드	32
부록 B. 참조	34

서 문

원자력발전소 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이 세계의 에너지 요구와 기후 변화에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하는데 필수적임을 고려하고; 지속적으로 안전, 보안 및 환경보호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며; 원자력 물질과 기술의 민감한 속성과 원자력발전소 기술사용이 평화적 목적에 국한되어야 함을 인식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에너지원¹⁾으로서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사용을 촉진하는 국가법과 규정, 국제법과 규범,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주요 기관의 권고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 보완을 추구하며;

원자력 공급자 그룹 가이드라인과 판매국과 구매국의 법과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여 수출하는 것을 약속하며;

원자력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은 효과적인 법률체계 및 규제, 기술 및 산업 인프라 그리고 자격을 갖춘 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한 곳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사건이 세계 모든 곳에 위해할 수 있고 원자력에너지의 기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유념하며.;

투명성, 건전성,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의 높은 수준을 지침으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국제적으로 우수한 사례의 실현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국이 그들의 관할 하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운전 및 폐로 하는 최종 책임을 가짐을 인식하며;

1) 본 원칙들은 부록B를 인용하며 관련 참가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문서의 이름은 굵은 글씨로 표시된다.

본 행동원칙들을 채택하는 판매자는 안전, 보안, 환경보호, 원자력 손해배상, 핵비확산과 윤리라는 여섯 가지 원칙에 기술된 우수사례를 이행토록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며;

본 행동원칙들은 원자력발전소 판매자, 운전자의 경험과 국제원자력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수사례에 근거한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년간에 걸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도로 규제 당국, 운영자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으로 비정부 합의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본 원칙들은 필요에 따라 검토되고 개정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얻는 교훈도 역시 이 행동원칙에 반영될 것이다.

참여하는 판매자는 원자력발전소 설계와 행동 이행에 있어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할 의사를 표명한다.

참여하는 판매자는 구매자와 공급자, 하도급사 및 기타 원자력발전소 산업 참여사에게 이러한 행동원칙의 속성, 목적 및 이익을 알려주며 이를 적용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본 원칙들은 자발적이고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는 참여자의 진실된 염원을 반영한다. 본 행동원칙의 기본 언어는 영어이다.

원칙 1. 안전, 보건 및 방사성 방호

구매자에게 원자력발전소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판매자는 구매국가에 다음을 기대한다.;

1.1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 안전 조약** 가입국이거나 발전소 운전 시작 이전에 가입국이 될 의향이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판매자는 구매국가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1.2 안전한 원자력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 규제, 조직 기반시설이 개발되어 있거나 **IAEA 안전표준인 “국가 원자력 프로그램을 위한 안전 기반시설”**에 제시되는 지침에 따라 개발 중에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와 개발에 관련된 계획은 구매국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자체평가 또는 IAEA 주도로 진행되는 PEER REVIEW와 같은 독립 외부 평가에 기초한다.; 그리고

1.3 안전하고 장기적인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인프라를 원자력발전소 운전 이전에 개발하려는 신뢰할 만한 2)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4 원자로 부지 결정시 국제적인 운전 경험과 중대사고를 고려한다.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2) 이러한 산업 기반시설의 필수적인 부분은 원자력발전소에 외부전원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선 그리드이다.

1.5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한다.;

1.5.1 판매자의 안전성 목표를 반영하여 일관성 있는 높은 안전성 표준을 적용한다.;

1.5.2 **IAEA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을 포함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안전성 원칙들의 타협 없는 적용을 반영한다.;

1.5.3 (a) 운전에 의해 입증되거나 또는 (b) 발전소 운전 이전에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안전성 원칙에 부합하는 시험 프로그램 또는 분석에 의해 입증된 신뢰할 만한 기술에 기반한다.;

1.5.4 관련된 **IAEA 안전 가이드**를 고려한 **IAEA 3)안전성 요건**에 부합하는 설계를 하며 구매국가의 규제요건에 부합한다.;

1.5.5 적절한 원자력 표준에 부합하여 제작된 기기를 사용한다.;

1.5.6 중대사고 관리 및 비상 대응 요건을 고려하는 설계조항을 포함한다.

1.6 필요에 따라 구매국가의 과학자 및 전문가와 정보를 교환하며 발전소 설계자가 부지특성 환경 및 핵안전 상황을 적절히 이해하도록 지원하여 현지 환경에 필요한 설계 보완을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안전한 발전소 운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해당 부지의 특정 중대 위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공급 계약 체결시 판매자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달성하고 실증하기 위해 사업 이행 기간 동안 충분한 주의를 요하는 임무 및 문제점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임무와 문제점의 책임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서 요건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3) IAEA 안전성 표준의 부록 B 참조

- 1.7 양측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루어야 할 임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1.7.1 최소한 판매국가에서 원전을 건설할 경우에도 적용할 만큼 엄격한 수준의 안전성 관련 서류와 입증된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 1.7.2 IAEA 국제 원자력 안전성 그룹 보고서 “**안전성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실제적 문제점**”에 정의된 높은 안전성 문화를 고양하며 건설 사업 전체에 걸친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모든 작업에 4)적용한다.;
- 1.7.3 만족할만한 수준의 시공관리를 보증한다.;
- 1.7.4 발전소 계통, 구조물 및 기기가 특정 표준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건설, 제작되며 설치되는 것을 보증한다.;
- 1.7.5 품질과 능력이 입증되거나 또는 판매자에 의해 평가 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에 한하여 설계, 시공, 제작, 설치 및 품질관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7.6 특정 표준과 요건에 부합하는 성과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하도급사들의 작업을 관리한다.;
- 1.7.7 구매자의 인적자원과 안전한 장기운전 능력을 개발한다.; 그리고
- 1.7.8 안전 운전에 필요한 비상운전절차와 사고관리 절차를 포함한 서류화된 작업절차서와 기타 안내서를 작성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와 구매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매자가 요청하거나 또는 별도 합의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국가와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관련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4) 벤더들은 원자력 문화에 관한 IAEA 일반원칙을 구현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로서 WANO의 “Traits of a Healthy Safety Culture”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1.8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국가의 국가산업 기반시설 요소를 개선한다. 예를 들어;

1.8.1 부지선정 과정의 안전성 측면;

1.8.2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전조건 유지에 필요한 현지 기술 개발;

1.8.3 주변지역 기반시설을 포함한 부지 밖 비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개발;

1.8.4 5)비상상황 발생 시 적시에 제공 하는 등의 투명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원자력발전소 운전 시작 이전에 다른 운영자의 경험과 안전 관행으로부터 배울수 있도록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IAEA와 세계원전사업자협회에 의한 기동 전 검토를 포함하여 다른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들과의 연계 구축의 6)이점을 알려주고,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를 연구한다.

5) 원자력 사고 조기통보 협약 및 원자력 사고 및 방사성 비상사태 지원 협약에 명시되어 있음.

6) 상세정보는 WANO 헌장을 참조.

원칙 2. 물리적 보안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함에 있어 판매자는;

2.1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보안을 위해 준비된 종합적인 설계조항을 포함한다.;

2.2 보안 설계조항이 원자력 안전성과 비상대응 요건⁷⁾에 부합하도록 확인한다.;

2.3 구매국가의 위협대응 설계기준을 포함하기 위해 구매자와 협력한다.;

2.4 구매국가의 위협대응 설계기준에 따라 보안 위협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해를 설계조항 내에 포함한다.

원자력발전소를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계약 체결 이전에 판매자는 구매 국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했는지 또는 적절한 시간 내에 수행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2.5 판매자가 설계를 완성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구매국가의 위협대응 설계 기준 분석결과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위협과 위험 분석은 발전소 위치와 지역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위협과 위험 분석 수행에서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표준을 고려한다.;

2.6 IAEA의 **원자력 물질의 물리적 보호 협약**과 2005년 개정협약에 가입한다.;

2.7 **UN 핵테러 억제협약**에 가입한다.; 그리고

7)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보안과의 연계에 대한 국제원자력 안전성그룹 (INSAG) 보고서에 논의됨

2.8 다음과 관련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는, 원자력보안을 위한 국가 법적 규제 기반시설을 개발한다.;

2.8.1 정부와 발전소 관리간의 보안책임을 부여한다.;

2.8.2 위협대응 설계기준에 적합한 보안대응 역량을 갖춘다.;

2.8.3 물리적 보안 조항에 관련하여 대중의 이익을 최대로 한다.

판매자는 효과적인 보안 조항을 수립하는 데에 구매자와 구매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매자가 요청하거나 또는 별도 합의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 국가와 구매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시간 안에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2.9 발전소 물리적 보안 조항은 IAEA **원자력 물질의 물리적 보호 조약**과 같은 확립된 표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립되어 있다.;

2.9.1 위협대응 설계기준을 사용하여 어떻게 보안 요원의 장비를 적절히 갖추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물리력을 잠재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2.9.2 보안 요원의 선발, 훈련 및 시험을 위한 적절한 표준 및 이행조항을 수립한다.;

2.9.3 발전소 설계 민감 사항을 포함하고 대응한다.;

2.9.4 보안계획에 효율적인 발전소 운전, 안전 및 비상 관리 대응 조항들을 고려한다.;

8) 그러한 원자력 보안 체계의 예는 [IAEA 원자력보안 기초 : 국가 원자력 보안체도의 목적과 기본요소]에서 찾아볼 수 있음

2.9.5 물리적 발전소 보안을 보증하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한다.

2.10 보안 대응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2.11 보안, 안전성, 비상대응 및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을 확립하고 이를 감시하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목표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책임을 갖는 통합 안전과 보안 점검 조직을 구성한다.

2.12 법 집행기관과 기타 구매국가 기관, 그리고 발전소 보안 사이의 지속적인 개선과 조정이 후속지원과 합동훈련을 통해 이뤄진다.

원칙 3. 환경보호 및 사용후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취급

구매자에게 원자력발전소 공급 계약체결 이전에 판매자는 구매국가가 다음 사항을 이미 갖추고 있는지 또는 적절한 시간 내에 갖추게 될 것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3.1 다음과 같은 국가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규제체제를 개발한다.;

3.1.1 신뢰할만한 다음의 국가 전략 및/또는 계획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구축하고 유지한다.;

3.1.1.1 사용후 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 취급/재처리 또는 기타 관리;

3.1.1.2 원자력 시설의 폐로 정지; 그리고

3.1.1.3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3.1.2 세이프가드 의무, 안전, 국가 및 국제 보안, 인간 건강, 상시적인 방사성 방출물의 효과적 관리와 환경 관리; 그리고

3.2 IAEA의 **사용후연료 관리의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연합조약**의 원칙 비준, 허용 또는 적용

판매자는 아래와 같은 발전소를 설계한다.;

3.3 ISO와 IAEA에서 정의된 방식들과 같은 관련된 우수사례를 적용하여 폐기물 생성을 포함한 발전소 운전에서 환경 이익을 높이고 환경영향을 9)최소화한다.;

9) ALARA 원칙 포함.

3.4 안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소 부지내 사용 후 연료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3.5 최종 발전소 해체를 용이하게 한다.

원자력발전소 판매 계약에 있어 판매자는 다음을 수행한다.

3.6 구매자가 사용 후 연료와 기타 방사성 물질 및 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를 하도록 한다.

판매자는 특별한 전문성이 있으므로 별도 합의에 따라 관련 정부와 구매자에게 진흥을 돕도록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7 세계 원자력 산업의 기술적 경제적으로 최고의 모범적인 사례들에 따라 천연자원을 책임 있게 사용하고 폐기물과 방출물을 감축하며 환경에의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한다.;

3.8 **국제연합 글로벌 협약**과 **리오 선언**에 명시된 환경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환경에 대하여 신중히 접근한다.; 그리고

3.9 사용 후 연료 및/또는 방사성 폐기물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구매국의 안전조치 의무사항과 부합하는 장기관리 시스템을 구매국가 내에 개발한다.

원칙 4. 원자력 손해 배상

구매자에게 원자력발전소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연료가 구매국가의 경계 내에 도달하기 전에 구매국가가 적절하고 신속한 공공 배상을 제공하는 법적체제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판매자는 독립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발생하기 힘든 사고의 경우에 대하여 동등하고 유효한 보호를 위해 다음의 우수사례를 하나 이상 적용한다.;

4.1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과 원자력 책임관련 법적체제;

4.1.1 현재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책임한계와 재무보호를 포함한다.;

4.1.2 구매국가의 보증으로 보호받는다.;

4.1.3 잠재적인 피해자에 의한 배상 청구는 전적으로 배타적인 책임을 갖는 발전소 운영자를 통하도록 하며 단일 권한이 있는 법정을 통하도록 한다.;

4.1.4 신체의 상해, 재산 손상, 환경 손상, 수입 손실,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예방수단을 포함한다.;

4.1.5 일방적인 엄격한 상호주의 요건에 의해 보상금을 따로 떼어 두거나 줄일 수 없게 한다.

4.2 **원자력 손해 민사 책임에 대한 IAEA 비엔나 협약**, 수정본에 따라 판매 국가와의 조약관계를 체결하며 또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 OECD의 **원자력에너지 분야의 제3자 책임에 대한 파리협약**, 수정본에 따른다.;

4.3 IAEA의 **원자력손해 보충배상 협약(CSC)**은 - IAEA의 통합된 세계의

원자력 책임 체제이며 비엔나 협약 국가 또는 파리 협약이거나 국가법이 CSC 부속에 일관되는 경우에 국가가 가입할 수 있다. 그러한 행동은 발전소 운전 및 국가간 이송 동안 국제적인 배상과 책임 보호를 보증하는데 결정적인 세계의 조약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원칙 5. 핵비확산 및 세이프가드

판매자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책임이 있다.

각 판매자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자재, 기기 및 기술¹⁰⁾이 구매국가에 제공되고 사용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목적에 한하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따르고 **원자력 공급자 그룹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며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부합되는 정책을 판매국가가 약속하는 것을 인식한다.

이와 더불어 각 판매자는 판매국가가 위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 법과 규제를 제정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책을 완전히 따르겠다고 발표하고 강력한 핵 비확산을 지지한다.

따라서 각 판매자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자재, 기기 및 기술을 단지 관련된 국가 수출 법과 규제 이행에 따라서 수출한다.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의 강력한 약속 표시로서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 5.1 핵확산을 어렵게 하는 방식의 설계를 촉진하고 IAEA 안전조치 요건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5.2 판매자에 의해 공급되는 촉발목록과 민감한 이중용도 품목의 전적인 평화적인 사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판매자의 경우, 판매국가와 구매국가 간의 양국간 협정 요건과 **원자력공급자 그룹 가이드라인**,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과 판매자 계약요건에 주의를 기울인다.;

10) IAEA INFCIRC/254/Part 1 최신 개정본 참조.

5.3 IAEA 의무 사항에 부합하는 원자력 물질 수량 관리와 안전조치 시스템을 시설에 시의 적절하게 이행하는 것에 대해 구매자로부터 약속을 받도록 추진한다.;

5.4 적절한 시간 내에 판매 국가의 적합한 정부당국과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다른 판매자들에게 판매자에 의해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기기, 자재 및 기술에 관련된 어떠한 심각한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알린다.; 그리고

5.5 세계 핵비확산 체제 준수에 있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 알게 되는 경우 또는 판매국가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 판매국가와 긴밀하게 상의하며 지침에 따라 11)행동한다.

위의 조항에 더하여 판매자는 구매국가가 효과적인 원자력 수출통제 방법을 시행하고 **IAEA 추가의정서**를 발효시킬 것을 양측 합의서에 의무 조항으로 포함하는 것을 환영한다.

11) 그러한 조치와 사건 예는 부록 A에 제시됨

원칙 6. 윤리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 6.1 최고의 윤리적 표준을 고객과 규제기관과의 관계에 적용한다.;
- 6.2 본 행동원칙 들에 대하여 선의와 투명성을 가지고 대화한다.;
- 6.3 근로자의 안전을 향상하고 공공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
- 6.4 프로젝트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고려한다.;
- 6.5 각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인접 지역사회에 계획된 사업 활동과 잠재적 사회 및 환경 영향에 대한 공공정보에 관하여 구매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한다.;
- 6.6 반부패와 이해의 상충(공익과 사리) 방지 및 **국제연합 반부패 협약**과 **OECD 국제사업 거래에서의 해외 공공 공무원 부패와의 전쟁협약**과 같은 반부패 법령 준수를 독려하며 구매자의 이에 상응하는 약속을 추구한다.;
- 6.7 아동과 강제노역의 금지, 고용차별 금지, 집회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 6.8 **세계인권선언**에서 추구하는 인권을 존중하며 국가가 인권보호의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 6.9 원자력발전소 산업의 공급자, 하도급사 및 기타 참여자가 윤리적 약속을 동일하게 존중하는 것을 독려한다.

부록 A

원칙 5의 부록. 핵비확산 및 세이프가드

세계 핵비확산 체제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과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A1. 국가가 **핵비확산 조약** 철회통지를 발행하거나 IAEA와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일방적으로 종료 또는 정지하는 경우이다.;
- A2. IAEA가 해당 국가의 협조 부재와 투명성 부족으로 **IAEA 포괄적 안전협정** 완전이행 또는 **IAEA 추가의정서**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또는 안전조치에서 요구하는 원자력 재료의 전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 A3. 국가가 IAEA 법령 XII.C 항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것이 IAEA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 A4. 국가가 핵 폭발 장치 시험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판매국가에 의해 정보가 제공되거나 판매자가 직접 인지하게 될 경우 판매자는 판매국가의 적절한 기관과 협의하고 그러한 기관이 내리는 지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판매국가 대응은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의결 1887**에 지시된 사항, **2010 NPT 검토회의 최종문서**, IAEA 법령 XII.C항에 부합하는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부록 B. 참조 국제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A/RES/58/4, October 31, 2003.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Adopt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igned December 17, 1997.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 Reproduced in IAEA INFCIRC/336, adopted September 26, 1986.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 Reproduced in IAEA INFCIRC/335, adopted September 26, 1986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IAEA INFCIRC/449, adopted June 17. 1994.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CPPNM)

- Reproduced in IAEA INFCIRC/274/Rev.1, May 1980.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Reproduced in IAEA INFCIRC/546, adopted December 1997.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

-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IAEA INFCIRC/567, adopted September 12, 1997.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A/RES/59/290, April 2005.

Paris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 Adopt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ebruary 12, 2004.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 Reproduced in IAEA INFCIRC/566, as amended September 12, 1997.

Considerations to Launch a Nuclear Power Programme

- Considerations to Launch a Nuclear Power Programm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Reproduced in IAEA GOV/INF/2007.

"IAEA Action Plan on Nuclear Safety" - Approv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n 13 September 2011

IAEA SAFETY STANDARDS

- Standards of safety issued pursuant to Article III(A)(6)10 of the IAEA Statute. Safety standards issued since 1997 in the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are designated as **Safety Fundamentals**, **Safety Requirements** or **Safety Guides**.

Establishing the Safety Infrastructure for a Nuclear Power Programme

- "Establishing the Safety Infrastructure for a Nuclear Power Programme," IAEA Safety Guides,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October 12, 2010.

IAEA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Safety Fundamentals,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SF-1, 2006.

IAEA Safety Requirements

- Refers to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esign," IAEA Safety Requirements,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NS-R-1, 2000.

IAEA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GROUP (INSAG) REPORTS

Key Practical Issues in Strengthening Safety Culture

- "Key Practical Issues in Strengthening Safety Culture," Report by the IAEA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Group, INSAG-15, 2002.

The Interface between Safety and Security at Nuclear Power Plants

- The Interface between Safety and Security at Nuclear Power Plants, Report by the IAEA International Safety Group, INSAG-24, 2010

IAEA SECURITY STANDARDS

IAEA Nuclear Security Fundamentals

- "Objective and Essential Elements of a State's Nuclear Security Regime", IAEA Nuclear Security Series No.20,2013

IAEA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 "Nuclear Security Recommendations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and Nuclear Facilities",INFCIRC/225/Rev5, 2011.

IAEA SAFEGUARDS

IAEA Additional Protocol

- "Model Protocol Additional to the Agreement(s) between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FCIRC/540 (Corrected), September 1997.

IAEA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Agreements Between the Agency and States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FCIRC/153 (Corrected), June 1972.

State System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 See "Systems of Accounting for and Control of Nuclear Material," IAEA Bulletin Vol. 17, no. 2, 1975.

OTHER DOCUMENT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Final Document of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 NPT/CONF.2010/L.2, May 27, 2010.

Nuclear Suppliers Group Guidelines

- Refers to 1.) "Guidelines for Nuclear Transfers," Reproduced in IAEA INFCIRC/254/Part 1, as amended November 7, 2007; and 2.) "Guidelines for Transfers of Nuclear-Related Dual-Use Equipment, Materials, Software and Related Technology," Reproduced as IAEA INFCIRC/254/ Part 2, as amended March 20, 2006.

Pertine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 Refers to resolu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that address issues relevant to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illicit trafficking. It includ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RES/1540 (2004), S/RES/1810 (2009), S/RES/1887 (2009) and state specific resolutions such as S/RES/1718 (2006) and S/RES/1929 (2010).

Rio Declaration

-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CONF.151/26 (Vol. I), adopted June 14, 1992.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 Reproduced in IAEA INFCIRC/140, March 5, 1970.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 "Ten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200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87

- Adop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in S/RES/1887, September 24, 2009.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resolution A/RES/217(III) A, December 10, 1948.

WANO Principles “Traits of a Healthy Safety Culture”

- PL 2013-1, May 2013